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점검 안내문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대상의 안전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법 개정(2022.12.1.)에 따라 신설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점검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관계인께서는 세부사항을 확인하시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개정사항

(점검목적) 공동주택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아파트 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

(점검시기) 시행일(2022. 12. 1.)을 기준으로 2년마다 전세대 점검

※ 시행일 이후 완공된 아파트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마다 전수점검

(점검자) 공동주택 세대주, 관리자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점검방법) 2년마다 1회이상 세대주, 관리자가 점검(세대점검표* 활용)하거나

자체점검시 관리업자를(종합 30%, 작동 50%) 통해 점검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공동주택 세대점검 동영상 시청

○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대상 중 수신기에서 원격점검으로

모든세대의 점검이 가능한 경우 해당점검으로 대체 가능

※ 선로단선인 세대 및 경계구역에 대하여는 현장 점검 실시

○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을 2년간 자체보관

연 천 소방서장